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05
----------	-------

발의연월일 : 2025. 9. 4.

발 의 자 : 박홍배 · 윤준병 · 박정현
한준호 · 김태선 · 박 정
전용기 · 이정현 · 김남근
이광희 · 김현정 · 이용선
김상욱 · 이용우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가능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에서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에 현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도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해당 부분의 금액에 대한 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압류로 무효가 되어 직접지급의 합의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5조의2(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효력) ①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이 시공을 완료한 기성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기성부분에 관한 하도급대금 지급청구권은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채권자가 압류하더라도 이에 대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압류명령 송달일이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일 및 시공 완료일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하도급대금 채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5조의2(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효력) ①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이 시공을 완료한 기성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기성부분에 관한 하도급대금 지급청구권은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채권자가 압류하더라도 이에 대항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압류명령 송달일이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일 및 시공 완료일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